1. 고 시 명 : 「천연기념물 · 명숭의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」

2. 고시내용

가. 내용

○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· 명승의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([붙임] 참조)

나. 관련근거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, 제62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
 제1항 제1호 다목, 제3호, 제5호

다. 적용범위

○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등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

라. 재검토기한

- 국가유산청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마. 기존 고시의 폐지: 천연기념물 · 명승의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
 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(문화재청 고시 제2024-44호,
 2024.3.1.)는 폐지한다.
- 3. 시행일 : 2024.5.17.
- 붙임 천연기념물·명승의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부. 끝.

붙임

천연기념물·명승의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

1. 공통사항

- 가. 「국가지정유산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」 공통사항에 따름
- 나. 산림, 갯벌,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·관리 이 고사목 제거, 어린나무 가꾸기,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

2.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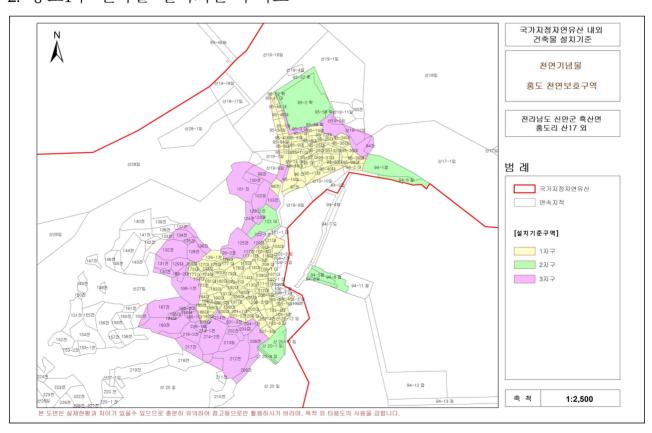
- 가. 천연기념물 「홍도 천연보호구역」내·외에서 [별표 1]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
- 나. 천연기념물 「마라도 천연보호구역」내·외에서 [별표 2]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
- 다. 명승 「부여 구드래 일원」 내에서 [별표 3]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
- 3. 천연기념물 포획·채취·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 군수·구청장 위임
 - 가. 천연기념물(동물분야, 식물분야, 천연보호구역) 내에서 동물·식물·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
 - 나. 천연기념물(지질분야),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·식물에 대한 포획·채취·반출 행위
 - ※ 단, "동물·식물"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·식물 種 및 노거수는 제외
- 4.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
- 5.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「국가지정유산 지정(보호)구역 및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등에 관한 기준(국가유산청 고시 제 2024-6호, '24.5.17.」에 의한다.

천연기념물 「홍도 천연보호구역」 내·외 건축물 설치기준

1.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

| 구분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------|---|
| 1지구 | o 4층 이하, 최고높이 18.0m 이하 |
| 2지구 | o 2층 이하, 최고높이 12.0m 이하 |
| 3지구 | o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o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·보수 행위 |
| 공통사항 | 과도한 성·절토 금지, 원지형 보존 건물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 또는 이전, 대수선행위를 말함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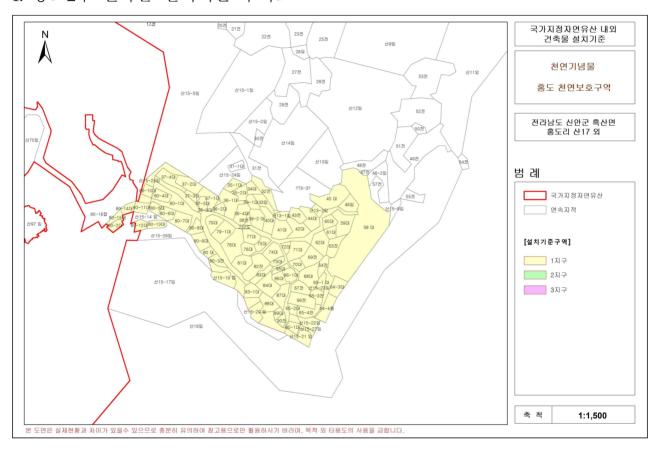
2.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



3.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

| 구분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------|--|
| 1지구 | o 1층 이하, 최고높이 8.0m 이하 o 기존 건축물 개·보수 및 개축·재축 허용 |
| 공통사항 | 과도한 성·절토 금지, 원지형 보존 건물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 또는 이전, 대수선행위를 말함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|

4.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



5. 건축물 증·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

| 구분 | 세 부 기 준 |
|------|--|
| 지붕 | ○ 경사지붕으로 하되,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1/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○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안정된 색감이 되도록 함 |
| 벽체 | ○ 벽체의 종류 및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 |
| 담장 |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, 돌담을 원칙으로 함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은 자갈·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고,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덩굴식물로 녹화함 |
| 조경 | ○ 건물 주변 빈 공터에는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- (사례) 동백나무, 후박나무, 소나무, 구실잣밤나무 등 |
| 주변정비 | ○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|

※ 기존 불법건물은 양성화하도록 하며, 증·개축 및 신축 시 위 기준 적용

천연기념물 「마라도 천연보호구역」내·외 시설 설치기준

1. 육상 및 해상 구역 설치기준

| 구분 | 세 부 기 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육상구역 (자연유산 구역) |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(B=2m 이하), 공중화장실, 파고라, 정자, 휴게시설(전체 3개소 이내), 기상관측, 급수, 전력생산시설, 학교 등 기존 범위 내개·재축 행위 ○ 군사시설의 설치 ○ 전선로 및 신·재생에너지 설비,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○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(*자생수종 선정) ○ 전통문화공간(애기업개 당, 해녀 불턱 등) 보수 정비 ○ 기존 도로(산책로 등) 개·보수 및 보호책 시설 ○ 안내판 설치(안내판 디자인은 국가유산청과 협의) ○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㎡이하의 개축 행위 |
| 육상구역 (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) | ○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내용을 따름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하되, 육상구역(자연 유산구역) 세부기준을 따름 |
| 해상구역 (자연유산 구역) | ○ 등대 및 항로표시등 설치 ○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※ 포구시설 및 해녀작업로 정비 등은 국가유산청의 행위 허가 후 시행 |
| 공통사항 | ○ 전동카트 및 차량 반입·운행 제한 - 전동카트는 가구당 1대만 소유하되, 거주 리민 이동 및 물자 수송수단, 긴급상황 발생 시, 자연유산 보존·관리 활동에 한하여 사용 -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, 반입 시자연유산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. 단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가목, 나목, 다목의 자동차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, 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행위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관리단체와 협의 후 처리 - 영리목적 반입 불가함 ○ 지하층 건축 제한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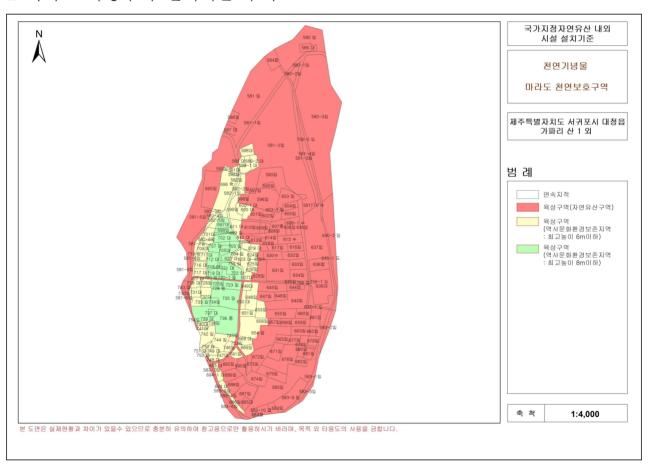
2. 건축물 재·개축 등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

| 구분 | 세 부 기 준 |
|--------|--|
| 높이 | ○ 건축물의 높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내용 을 따름 |
| 지붕 | ○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하되, 모임지붕 및 박공지붕으로 설치 ○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─자형으로 하고, 지붕상부 물탱크실, 계단탑, 옥탑 등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*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하고, 지붕 용마루는 ¬자, ㄷ자 등을 지양 ○ 재료는 제주석(자연석, 판석 등), 점토기와 등으로 하되,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하고, 빛 반사되는 재질은 사용을 금함 |
| 벽체 |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하되,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,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·황토색 계열로 함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(현무암 무늬) 붙임 시공 |
| 색채 | 건축물의 벽면,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재료고유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|
| 담장(돌담) |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, 돌담을 원칙으로 함시멘트블록 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(현무암 무늬) 붙임 시공 함 |
| 조경 | ○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○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- 숲 조성구역에 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식재 * 좀굴거리, 동백나무(토종), 해송, 생달나무, 사스레피, 돈나무, 광나무, 감탕나무, 후박나무, 참식나무, 우묵사스레피, 담팔수나무, 아왜나무, 머귀나무, 팽나무, 천선과나무, 다정큼나무, 황칠나무, 푸조나무, 붉나무, 모새나무, 종가시나무, 조록나무, 박달목서, 황근, 까마귀쪽나무 |
| 주변정비 |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가설물 설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·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집수 시스템 개선 식수 라인은 공동으로 공급하고, 생활 용수는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 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·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차폐 |

3.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

| 구분 | 세 부 기 준 |
|---------|--|
| 도로시설 |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, 제주판석(난석)깔기, 제주석,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|
| 전기·통신시설 | ○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, 공동구에 수용토록 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○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,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* 신규시설 설치 시 개별검토 대상 |

4. 마라도 육상구역 설치기준 구역도



명승「부여 구드래 일원」내 시설 설치기준

1. 자연유산 구역별 설치기준

| 구분 | 세 부 기 준 |
|------------|--|
| 명승 및 | |
| 유적공원 | ○ 건축행위 제한 |
| 지구 | |
| 구교지구 | ○ 평지붕 8m, 경사지붕(10:3 이상) 12m 이하 ○ 지하층 설치 제한 ○ 탐방로 개보수, 가스·전기·통신·소방·수도 관로 개보수 ○ 신축, 증축, 재축, 개축, 이축 등 건축행위 시 발굴조사 선행 |
| 경관보존 지구 | ○ 기존 주택에 한하여 구교지구의 기준 준용 |

2. 부여 구드래 일원 시설 설치기준 구역도

